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약혼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없이 파혼당한 사람은 상대방에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가 생사가 일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방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결혼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자료제공:한국가정법률상담소-